

성년 후견 제도

- 이용을 고려하시는 당신에게 -



목차

1.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P1
2.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P3
3.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P5
4. 수속의 흐름 P7
5. 신청에 대하여 P9
6. 성년 후견인 등의 선임 P10
7. 적절한 후견 등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P11
8. 후견 등 사무 및 보고 P13
9. 후견 등의 종료 P14



1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

1



돈 계산이나 관리가 서툴러서 비싼 물건을 사거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수속을 할 때는 어머니에게 맡겼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2



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물건을 사곤 하는 일이 증가하였다. 혼자 살 게 아니라 그룹 홈(공동 생활 시설)에 입소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3



악질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사기를 당할 뻔했다. 최근에 건망증도 심해져서 앞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4



장차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는 누가 도와줄지 불안하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을 고려해 봅시다 -

-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

성년 후견인 등이 내 대신 은행에서
수속을 해 주었다. 앞으로도 성년
후견인 등이 도와 줄 것이므로 마음이
놓인다.



성년 후견인 등이 상담해 주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내 집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설사 사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성년 후견인 등이 그
계약을 취소해 준다.



아들이 임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다. 아들이 나를 도와 주게
되어서 마음 든든하다.



※성년 후견인 등이란 보조인, 보좌인, 성년 후견인을 말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5·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1

성년 후견인 등으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서 본인에 맞게 생활하는 방식이나 돈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인지 등을 생각합니다.



2

본인의 희망 등을 듣고 필요한 수속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기도 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수속을 하기도 합니다.



성년 후견인 등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3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본인을 보호합니다.

본인이 악질 업체에게 속아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등의 문제에 말려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생활 상황을
가정법원에 보고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모습, 돈이나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가정법원에
보고합니다.



3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분(여기서는 '본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 줄 사람('성년 후견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성년 후견 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임의 후견 제도와 법정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기 전** ▶ ① '임의 후견 제도'로
-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이후** ▶ ② '법정 후견 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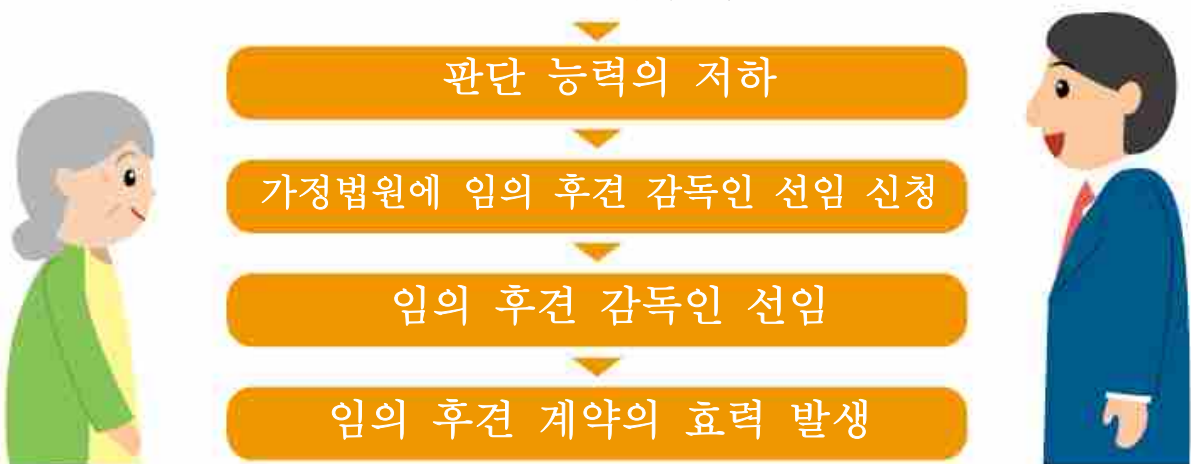
① 임의 후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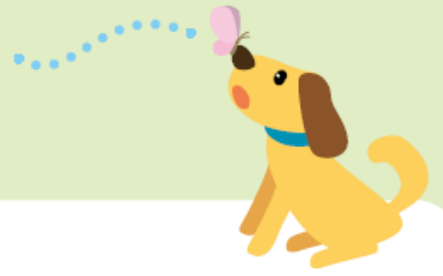
본인에게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는 동안에,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미리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임의 후견인)이 대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계약(임의 후견 계약)으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임의 후견 계약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속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증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가정법원에서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임의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수속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 수임자입니다.

임의 후견 계약 체결





2 법정 후견 제도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이후 가정법원에 의해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의 3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정 후견 제도의 3 종류

	보조	보좌	후견
대상이 되는 사람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이 통상 상태인 사람
성년 후견인 등이 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1)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 행위(※2)	차금이나 상속 승인 등 민법 13조 1항에 기재된 행위 외에,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
성년 후견인 등이 대리할 수 있는 행위(※3)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 행위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

※1 성년 후견인 등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일용품 구입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민법 13조 1항에 기재된 행위(차금, 상속 승인이나 포기, 소송 행위, 신축이나 증개축 등)의 일부에 한합니다.

※3 본인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보조 개시 심판, 보조인에게 동의권·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 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수속의 흐름

시구정촌·민간단체 등

시구정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포괄지원센터나 핵심 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성년 후견 제도에 관련된 전문직 단체(변호사회, 사법서사회, 사회복지사회 등) 등에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수속, 필요한 서류, 성년 후견인 등이 되어 줄 사람의 확보 등에 대해 미리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수속에 대한 설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수속 안내로

가정법원

수속 안내

후견 등 개시 수속의 흐름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용 DVD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 신청하려면 신청서 등의 서류와 신청 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방문하는 일시에 대해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2 조사 등

- 법원에서 사정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별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3 심판

- 후견 등의 개시 심판을 하는 동시에 성년 후견인 등을 선임합니다.

4 보고

- 성년 후견인 등은 선임 후 신속하게 본인의 재산이나 생활 상황을 확인한 후, 재산 목록 및 수지 예정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성년 후견인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1년에 1회 본인의 생활이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청에 대하여

- Q1. 신청은 어느 법원에서나 가능한가요?
- Q2.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Q3.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 비용이 필요한가요?
- Q4.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Q5.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는지요?

A ▶ 상세 내용은 9 페이지로

Q 성년 후견인 등의 선임



- Q1. 성년 후견인 등에는 어떤 사람이 선임되나요?
- Q2. 성년 후견인 등은 선임되면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A ▶ 상세 내용은 10 페이지로

Q 적절한 후견 등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 Q1. 성년 후견인 등에 의한 적절한 후견 등 사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Q2.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및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의 시스템과 수속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A ▶ 상세 내용은 11 페이지로

Q 후견 등 사무 및 보고

- Q1.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후 어떠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요?
- Q2. 후견 등 사무의 보고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하는 건가요?
- Q3. 성년 후견인 등에게는 보수가 지불되나요?
- Q4.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상세 내용은 13 페이지로

Q 후견 등의 종료

- Q1.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 Q2.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A ▶ 상세 내용은 14 페이지로



5 신청에 대하여



Q1 신청은 어느 법원에서나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십시오.
관할 가정법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Q2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입니다. 그 밖에 시구정촌장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다음의 사람들이 사촌 이내의 주요 친족에 해당합니다.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자매, 조카, 조카딸
- 백(숙)부, 백(숙)모, 사촌 -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Q3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 비용이 필요한가요?

A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중 주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진단서(성년 후견용)
 ※신청서 및 진단서(성년 후견용) 용지는 가정법원이나 법원 웹사이트(뒤표지를 참조하십시오.)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1 건당 800 엔분의 수입인지)
 ※보조나 보좌에서 대리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각의 신청에 대해 수입인지 800 엔분이 필요합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2,600 엔분의 수입인지)
●우표
●본인의 호적등본
●감정료(감정하는 경우)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마련되어 있는 일람표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Q4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본인의 판단 능력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의사가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료가 필요합니다. 감정료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료를 포함하여 신청에 필요한 수속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의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의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Q5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는지요?

A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후보자로서 추천하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신청 취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성년 후견인 등의 선임



Q1 성년 후견인 등에는 어떤 사람이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에서는 후견 등의 개시 심판을 하는 동시에 성년 후견인 등을 선임합니다.

성년 후견인 등을 선임할 때는 가정법원이 본인에게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A

신청할 때 본인에게 법률상 또는 생활 면에서 과제가 있거나 본인의 재산 관리가 복잡하고 곤란한 등의 사정이 판명된 경우에는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 성년 후견인 등의 직무나 책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을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누구를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하느냐 하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성년 후견인 등은 선임되면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성년 후견인 등은 선임 후 신속하게 면담 등을 통해 본인의 생활 상황과 향후 생활상의 희망 등을 확인합니다. 또, 은행 등에 필요한 신고를 하고, 후견 등 사무의 방침을 세운 후, 재산 목록 및 수지 예정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A

- ※은행 등에 필요한 신고를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후견 등의 개시 심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무국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은 본인의 예·저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 ※수지 예정표는 본인의 수입과 지출 예정에 대해 생활 상황을 바탕으로 기재한 서면입니다.



7 적절한 후견 등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Q1 성년 후견인 등에 의한 적절한 후견 등 사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 후견 감독인 등의 선임

예정되어 있는 후견 사무가 복잡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등의 사무를 돕기 위해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을 후견 감독인 등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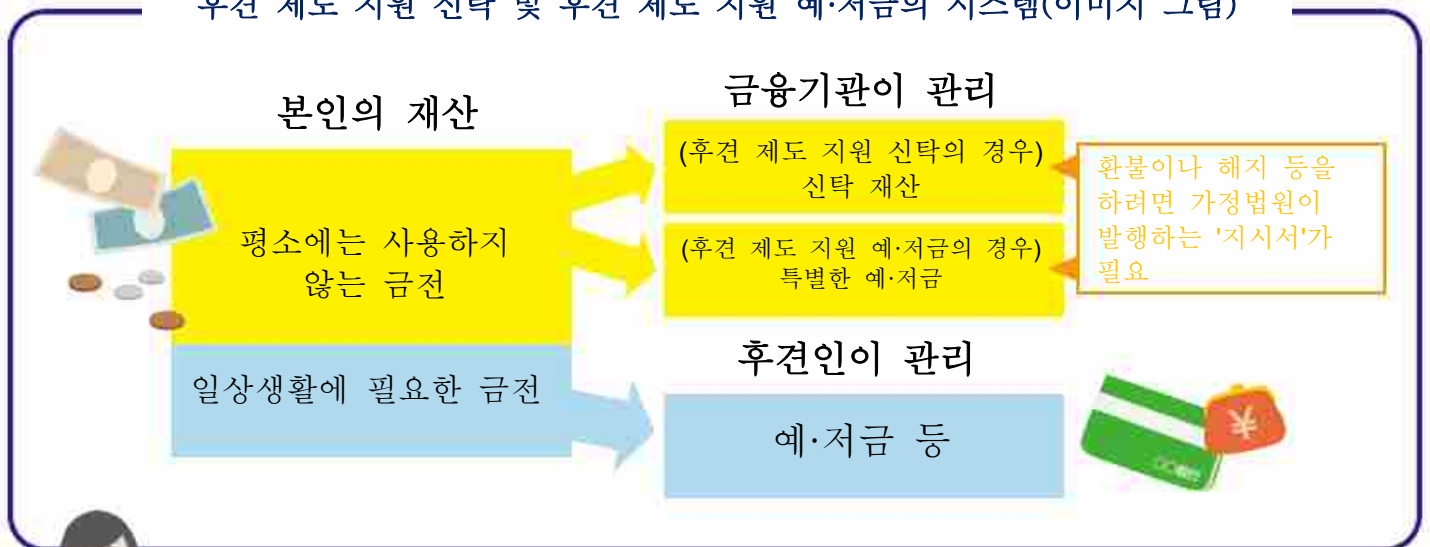
●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또는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의 이용

성년 후견인이 적절하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서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또는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의 이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본인의 재산 중 일상적인 지출에 필요하고 충분한 금전을 예·저금 등으로서 성년 후견인이 관리하고, 통상 사용하지 않는 금전을 신탁 재산 또는 특별한 예·저금으로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성년 후견인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관리하게 되어 재산 관리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및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의 시스템(이미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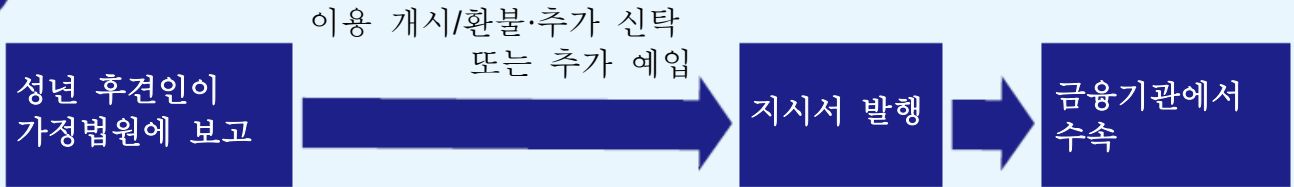


※본인을 위해 급하게 거액의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는 지시서를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Q2
A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및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의 시스템과 수속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등 이용의 적부에 대한 검토

성년 후견인은 본인의 생활 상황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등의 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법원에 보고합니다.

● 신탁 계약 또는 예·저금 계약의 체결

가정법원은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등의 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탁 계약이나 예·저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지시서를 성년 후견인에게 교부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금융기관에 지시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환불이나 추가 신탁 또는 추가 예입

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불하거나 추가로 신탁하거나 예입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수속에는 가정법원이 발행하는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 ※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및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은 보좌, 보조 및 임의 후견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후견 제도 지원 예·저금은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미성년 후견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십시오.
- ※ 후견 제도 지원 신탁 등을 이용할 때 전문직이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으로서 관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별도로 금융기관의 관리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 체결 후 전문직이 관여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전문직은 사임하게 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예입하거나 환불할 때 후견 감독인 등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예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십시오.



8 후견 등 사무 및 보고



Q1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후 어떠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요?

A

성년 후견인 등은 본인의 의향을 존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상을 배려해야 합니다.

또,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년 후견인 등이 본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 등을 해임하는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등 민사 책임을 묻게 되거나, 업무상 횡령 등의 죄로 형사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후견 등 사무의 보고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하는 건가요?

A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에게 후견 등 사무의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 이 보고를 통해 성년 후견인 등이 적절하게 사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성년 후견인 등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정해진 시기에 후견 등 사무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Q3

성년 후견인 등에게는 보수가 지불되나요?

A

성년 후견인 등이나 후견 감독인 등이 가정법원에 보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 보수를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의 후견 감독인도 가정법원에 보수 부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게 됩니다.

Q4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본인이나 성년 후견인 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국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십시오.(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또, 그럴 때는 가정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

법원의 웹사이트(뒤표지를 참조하십시오.)에서는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후견 등의 종료



Q1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는 본인이 질병 등으로부터 회복하여 판단 능력을 되찾거나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신청의 계기가 된 당초의 목적(예를 들어 보험금 수령이나 유산 분할 등)을 달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년 후견인 등을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2 성년 후견인 등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대한 연락 및 보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연락해서 그 후의 사무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법무국에 대한 등기 신청

가정법원에 대한 연락 등 외에 법무국에 '종료 등기'를 신청하십시오.(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문의처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이나 신청에 대한 상담

각 시구청촌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 ※ 장애인의 상담 창구는 시구청촌 및 시구청촌이 위탁한 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입니다.
- ※ 시구청촌에 핵심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상담 창구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구청촌의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 ※ 법정 후견 제도를 이용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시구청촌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구청촌의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의 문의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

<https://www.houterasu.or.jp/>



0570-078374

- ※ 일반전화의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3분 8.5 엔(세금 별도)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 ※ IP 전화의 경우에는 '03-6745-5600'으로 전화하십시오.

후견 제도 지원 신탁에 대하여

일반사단법인 신탁협회 리플릿

'후견 제도를 백업·후견 제도 지원 신탁'

<https://www.shintaku-kyokai.or.jp/document/pamphlet.html>

성년 후견 등기에 관한 신청 등에 대하여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

- ※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 신청서는 가까운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을 수 있는 외에,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임의 후견 계약에 대하여

일본공증인연합회 또는 전국의 공증사무소

<http://www.koshonin.gr.jp/>

TEL 03-3502-8050

성년 후견 제도의 신청이나 수속 안내

법원 웹사이트(후견 포털 사이트)

<http://www.courts.go.jp/koukenp/>

後見ポータルサイト

검색

- ※ 수속에 대한 설명 외에, 가까운 가정법원과 신청서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